

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「경찰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

의안 번호	79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7월 30일

발 의 자 : 강동길, 김기덕, 김종무,
문장길, 송명화, 이승미,
이은주, 이정인, 이호대,
조상호, 홍성룡 의원 (11명)

1. 주 문

- 광역단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, 지방재정부담, 치안력 약화 등 시행초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현행 「경찰법」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후 전국 전면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 변경 및 전면 개정 사항을 골자로 한 「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」이 제출(2019.3.11.)되었음.
- 본 법률개정안은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여 일체감을 형성하고 원활한 상호협조·협력체계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음.
- 이는 광역단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,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

한편, 지방재정부담과 치안력 약화 등 시행초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,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 시범운영도 계획되고 있는 상황임.

- 그런데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「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」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바, 이를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.

2. 제안이유

- 자치경찰제도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,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 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력을 높이는 한편,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음.
- 이에 따라 그동안 지난 역대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전 단계까지 추진되기도 하였으나, 결국에는 여러 정치적 사안에 따라 후순위로 배제되고, 이해관계 조직들의 첨예한 대립과 소모적인 이전투구 양상으로 인해 도입이 번번이 무산된바 있음.
- 따라서, 정부와 국회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는 법적근거인 「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」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함.

3. 이송처 : 국회, 행정안전부

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「경찰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

- 자치경찰제는 헌법상 명시된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시대적 과제로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행정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적 도입 과제임.
-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시하면서 자치경찰제는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지수 향상, 지방자치의 이념실현과 합리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음.
- 이에 「경찰법」을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 변경 및 전면 개정 사항을 골자로 한 「경찰법 전부 개정법률안」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여야의 정치적 대립과 대치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.
- 특히, 자치경찰제의 연착륙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.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해 「경찰법 전면개정법률안」의 조속한 개정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함.

- 첫째, 서울특별시는 특별사법경찰 ‘창설 10주년’을 맞아 그동안 운영한 특별사법경찰제의 현황, 수사실적 등 실질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, 이를 자치경찰로 승화시켜 운영할 수 있는 중·장기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.
- 둘째, 서울특별시는 국가의 수도로서 제도를 선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입해야 할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해야 함.
- 셋째, 자치경찰제의 전국단위 도입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다양한 내·외부요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며,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직 및 인사, 사무와 권한, 국가 및 자치경찰과의 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객관성이 담보 되어야 함.
-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사상 최초가 될 것이며, 국민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고 국가 전체 치안시스템을 개편하는 중대한 문제로써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치경찰제가 지니는 분권, 안전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「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」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와 서울특별시의 특성이 반영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함.

2019. . 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